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김현지(Hyun-Jee Kim)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와 자율준수제도 | 참고문헌 |
| III. 주요국의 자율준수체제 동향 및 사례연구 | Abstract |
| IV.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과제와 경쟁력제고 방안 | |

Abstract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has been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 We should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this and perform clean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for focusing to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for build to ICP.

Each member of company have to convert their perception for controlling strategic items. Also, they have to build controlling system in ERP system and extend Incentive for CPs. the support to the trustworthy controlling system.

Korea is actively trying to control strategic items export for world peace and national security. So the related enterprise needs to manage voluntary export system.

Key Words : WMD, Strategic Items, Export Control Law, 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
Korea Export Control System

* 본 논문은 2006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무역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바세나르체제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약을 통해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물품 거래의 주체인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전략물자 자율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¹⁾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업 내부에 조직을 구성하여 수출 절차상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선진국들이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를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인식하며 이 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 의지와 전략물자 관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세계 평화와 올바른 무역질서 정착을 위한 장애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수출 증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하나로 인식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출통제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분석과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살펴보고,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II장에서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와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의 자율준수체제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며, 이에 따라 제IV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에 관한 기존연구는 다자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수출통제 방안과 제도적·

1) 기업 내의 준수하는 문화(a culture of compliance)를 발전시키는 관행과 태도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능가하도록 기업이 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통상적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수출 증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하나로 인식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통한 경쟁력 측면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있지만,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석기(2005)²⁾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 WMD 수출의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진의 인식전환과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내부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진 외(2006)³⁾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로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WMD 비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지석(2006)⁴⁾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등장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법령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력을 위해 정부, 기업, 정보센터의 3자가 전략물자 통제제도, 정보관리시스템, 기업인증제에 의한 자율준수체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2005)⁵⁾는 선진국의 전략물자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모범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일본기업의 CP 모델 및 전략물자 수출관리방안으로서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와 기업의 위기관리로서 자율적으로 하는 관리로 나누어 기업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략물자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율준수체제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석기,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동향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5 참조.

3) 이상진 외,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5 참조.

4)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체제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참조.

5)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미국·일본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사례」, 2005, 「일본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모델」, 2005,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의 기업의 대응」, 2004 참조.

II.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와 자율준수제도

1.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의의 및 영향

1) 의의

일반적으로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및 기술로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⁶⁾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를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여러 회원국들이 문서로 합의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협의·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라 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통제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이들 통제대상 품목의 수출을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규체제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1〉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현황

		정식 명칭	설립 연도	회원국 수
조약/기구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핵확산금지조약)	1968년 (1970년 발효)	188개국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1996년	122개국 (서명국은 175개국)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	1957년	138개국

6) 김현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안보연구』, 제1권 제2호, 2007, p.38 참조.

7) 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 참조

	C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화학무기 금지협약)	1993년 (1997년 발효)	162개국 (서명국은 167개국)
	BWC (BT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생물무기 금지협약)	1972년 (1975년 발효)	153개국 (서명국은 169개국)
수출 통제 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핵공급국 그룹)	1975년	45개국
	ZC	Zangger Committee (쟁거 위원회)	1971년	36개국
	AG	Australia Group (호주 그룹)	1985년	40개국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87년	34개국
	WA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바세나르 협약)	1995년	40개국

주 : 2005년 현재

자료 :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http://cns.miis.edu/pubs/inven/index.htm>).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국제평화 및 안보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위험물자를 우려용도에 공급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국제무역은 촉진한다는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⁸⁾ 그러므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자유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장치이며 국제무역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기업의 불활실성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이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향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수출품의 용도, 최종 사용자, 거래의 전 과정에서 수출자의 관리의무를 부과

8)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 2006, p.51 참조.

는 제도이다.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통제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 품목 및 지역을 정하여 수출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제재조치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거나 수출입금지 등의 처벌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⁹⁾

첫째, No-undercut 통제의 시행을 들 수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참여국간에는 어느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을 특정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수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참여국도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 거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둘째, 통제물자 및 최종 사용자를 분석해야 한다. 1991년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확산 통제강화계획'(Enhanced¹⁰⁾ Proliferation Control Initiative: EPCI)이 도입되어 수출품의 최종용도 및 최종 사용자 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게 되었다.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최종 수요자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Catch-all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 강화를 통한 수출 기업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셋째, 위험거래 심사에 위험신호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수출통제 당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위험거래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험신호(Red Flag)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이러한 항목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국의 Red Flag 항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Red Flag 항목들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위험거래 심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략물자의 관리의무를 들 수 있다.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체제는 '리스트 통제(list control) 방식'으로 통제품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한다. 그런데 1991년 걸프전 이후 비확산체제의 리스트 통제품목 이외의 물자가 이라크의 WMD 개발 프로젝트에 이용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은 1991년 리스트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품목·기술이 WMD의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을 '수출자가 안다면'(know 요건), '알 근거가 있다면', 또는 '수출관리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는다면'(inform 요건) 수출관리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이나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자사제품이 통제대상 물품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통제대상에 해당하면 법과 제도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그 물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떤 용도에 사용될지를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통제체제의 준수를 위해 기업규모, 수출품목의 성격, 수출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ICP 구축을 장기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수출통제」, 상계서, pp. 52-55 참조.

10) Catch-all 제도'는 수출품목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바이어나 최종사용자가 WMD로 전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해당국 정부로부터 수입증명서를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정부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허가 여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1) 미국의 "전용위험심사"(Diversion Risk Screen) 혹은 일본의 '명확한 때'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위험신호지표'(Red Flag Indicator)라고 한다.

2. 자율준수체제의 개요

1) 자율준수체제의 의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이를 수출에 대한 또 다른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자 책임으로 인식하여 자사제품이 통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자율준수체제(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를 갖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란 무역거래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로 내부 자율준수제도(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수출관리제도(Export Management System: EMS)로도 통용된다.¹²⁾

외국의 경우 중견 이상의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에서 CP 도입은 수출통제를 위해 당연시 되고 있으며, 통제대상 해당여부의 판단 및 필요한 허가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제도로 중시되고 있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거의 모든 중견기업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유출경로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atch - all(상황허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수출자에게 이중 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Catch-all 제도가 9.11 이후 전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은 수출품목의 『최종 사용용도』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우려용도로의 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장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단이 된다.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은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효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내부적인 준수 프로그램 운용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수출선적의 적기실행이 용이해지는 한편, 행정기관은 업무부담 절감에 따라 실질적 통제업무 수행이 용이하다.

셋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경우 일정기간(1~2년) 유효한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개별 수출허가시의 행정적 부담과 무역거래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12) 「수출통제」, 전게서, p. 290 참조.

2)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필요요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부적절한 수출의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준수를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자율적 수출통제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자기방어를 위해 ICP를 운영하고 있다. ICP의 운영은 기업규모, 수출품목의 성격, 수출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도입을 결정할 사항이며 특히, 각 기업은 장기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내부통제체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¹³⁾

- ①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업내에 공지
- ② 내부통제체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과 인원의 배치
- ③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수출절차관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 ④ 임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의 실시
- ⑤ 내부감사제도의 제정, 시행
- ⑥ 전략물자 등의 거래관련 기록 및 자료의 보관·유지

3. 한국의 수출허가 및 자율준수체제 현황

1) 수출허가 현황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에서 허가된 것은 2003년 491건 중 477건에서 2006년 760건 중 656건으로 증가하였고, 거부된 것은 2003년 7건, 2004년 5건, 2005년에 2건, 2006년 1건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허가 신청금액은 개별 수출허가기준으로 2003년 1억2천만불에서 2004년 3억7천만불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2억1천만불로 줄어들었지만 2006년에는 5억 5백만불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캐치올 허가실적으로는 2003년에 4건에서 2004년 11건, 2005년에 1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67건으로 증가하였다. 전략물자와 관련된 품목류는 HS 10단위 1,351개(2004년 조사)로 관련 수출업체는 14,000여개(2003~2004년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포괄 수출허가가 4건 발생하였다.

13) 「수출통제」, 전개서, pp. 292~293 참조.

<표 2>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단위 : 건, 천USD)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출허가	신청	491	4,076,072	493	3,718,405	582	4,244,711	763	25,024,475	
	허가	허가	477	116,221	462	373,879	554	214,799	656	505,419
		개별허가 금액	477	116,221	462	373,879	554	214,799	652	505,419
		포괄수출 실적금액	-	-	-	3,240,937	-	4,027,434	4	6,619,874
	거부	7	653	5	471	2	205	1	30	
	반려	7	715	26	103,118	26	2,274	66	347,705	
catch-all 허가	신청	4	1,439	13	121,947	19	11,172	105	338,656	
	허가	4	1,439	11	121,745	19	11,172	67	19,911	
	거부	-	-	2	202	-	-	-	-	

주) 1. 2006년 포괄허가실적은 실제 수출신고 실적임.
 2. 2005년 총신청건수 610건 중 2006년 결과(9건), 철회(19건)는 신청에 미반영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 참조.

2) 자율준수체제 현황

(1) 관련법령 내용

우리나라는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령인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전략물자를 자율통제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우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갖춘 자¹⁵⁾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1조의7).¹⁶⁾이 경우 산

14) 김현지, 전계서, p. 50 참조.

15) 자율적인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당해 수출거래 여부를 결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물자의 확인부터 거래심사의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6) 이때,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체계, 최종 사용자 및 용도 심사·분석 체계, 전략물자 수출허가

업자원부장관은 4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관리의 범위 및 보고의무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 중 수출허가·증개허가·신고의무 중 일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1조의7 제2항, 시행령 제45조의2).

이에 따라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일체의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하였다. 이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동 제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다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허가를 면제키로 하고 대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만 제출토록 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율적 관리사항과,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7 제3항, 시행령 제45조의3)..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현황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제도로 중시하고 있어 중견이상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CP도입은 당연시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 수출통제시스템을 채택한 자율준수기업은 미국의 경우 4,000개에 이르며, 일본 및 영국도 약 1,000개 기업이 CP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이며,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자율준수기업에 대하여는 포괄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야 최초로 CP를 도입하여 200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 등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31개사를 지정(인증)하고 있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경우 일정기간(1~2년) 유효한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개별 수출허가시의 행정적 부담과 무역거래상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인증)에 따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할 수 있다.

17) 2007년 12월 말 현재 산업자원부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으로는 캐논세미컨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삼성물산,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삼성SDI, 삼성전기, 주성엔지니어링,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씨씨아이, 매그나칩반도체, LG필립스LCD, 두산중공업, 동우화인켐, LG전자, 삼성정밀화학, 디아이, 케이씨텍, 피에스케이, BNF테크놀로지, 예스티,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파인디앤씨, 국제엘렉트릭코리아,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인지디스플레이, 엑시콘, 덕인, LG상사, 에스에프에이 등 총 31개 사가 지정 되어 있다.

Ⅲ. 주요국의 자율준수체제 동향 및 사례연구

1. 주요국의 자율준수체제 동향

1) EU

유럽연합은 역내에 많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안보를 위한 확인절차 준수는 원활한 화물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2005년 4월, 관세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통제를 3년간 준수한 기업을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하고, 이들 위주로 통관과정의 관련 당사국간 정보공유체제 구축하여 차별적인 신속통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좁은 일부 표본 검사로 비효율적인 적발로 처벌하는 방식에서 모범 준수기업에 신속통관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유럽 국가들도 EU기준에 의한 수출통제능력을 갖추야 EU시장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공조하고 있다.

(1) 독일

독일의 경우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임원을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¹⁸⁾에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7,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

독일의 전략물자 수출허가과정은 대기업이나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자율준수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 자율준수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통제품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및 판정오류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으므로,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정부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고위급 임원을 BAFA에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실무자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고위급 임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국과 함께 1991년 'Catch-all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산업노동부의 직권으로 운송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¹⁹⁾

(2) 프랑스

프랑스는 무기 및 무기체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세계 제2위의 무기수출국이다. 프랑스는 전략물자를 전쟁물자(war materials)와 이중용도물자로 구분하여 통제하는 2원적인 수출통제제도를 구비·운영하고 있

18) 독일은 영국의 ECO(수출통제국)와 달리 모든 수출허가업무를 BAFA가 관할하며, EU 회원국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판정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개의 국(행정관리국, 수출절차국, 수출통제국, 에너지국)으로 구성된 BAFA의 수출통제관련 업무는 수출절차국과 수출통제국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19) 「수출통제」, 전계서, pp. 160~161 참조.

다. 전쟁물자의 수출은 관료적으로 엄격한 법률 및 규제체제, 다단계 승인제도(multi-stage authorization system), 총리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수출승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처간 자문(inter-ministerial consultations)에 의해 통제된다.

프랑스는 최종사용자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우려국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으며 사안별로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나,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등 7개국에 대해서는 민감한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 이중용도품목의 통제목록은 기본적으로 EU 목록과 동일하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는 않고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지속적 확대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의 수출통제국(Export Control Organization: ECO)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류를 ECO에 제출하면, 국방부, 외교부, 국제개발처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친 후 ECO가 최종적으로 수출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영국 정부는 기업의 자율준수제도(CP)를 통하여 각종 국제수출통제정보를 수출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현재 약 1,000여개의 대기업들이 CP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ECO하에 설치된 CP 담당과가 수출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준수방문(compliance visits)을 통하여 관련 수출통제법규를 이해하게 하고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는 등 CP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행동규약'(code of practice)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불가피한 지적의 경우 6개월 후 재방문하여 확인하고, 심각한 지적의 경우 포괄수출승인의 제한이나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세관에 통보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2) 미국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업이 수출관리규정(EAR)을 준수하기 위해서 수출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Export Management System(EMS)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9월 최초로 '수출관리체제(EMS)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모범사례와 여러 가지 도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CP를 관리요소와 심사요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관리요소는 수출통제 정책, 조직, 문서보관, 교육, 내부감사, 보고로 구성되며, 거래심사요소로는 기업이 EAR 규정에 맞게 수출통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²⁰⁾들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각

20) 거래부적격자 심사, 상품/국가 허가결정 심사, 전용위험 심사, 핵관련 심사, 미사일 심사, 생화학무기 심사, 반 보이콧

기업의 실정에 맞게 내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같은 품목을 반복하여 해외 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매년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가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특별포괄허가(SCL)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 신청자가 미국의 수출자로서 신청자와 거래처 모두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Program)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 참가자 모두 ICP 실시와 관련하여서 미 산업안보국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일본

1987년 코콤위반사건²¹⁾을 계기로 일본 통산산업성(MITI)은 1987년 9월 150여개 수출관련 단체에게 자율적인 수출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한 이후 현재와 같은 기업자율준수체제가 정착된 것은 1994년 6월 이후부터 '비확산형 수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관리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의 책정과 개정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내부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구축할 것을 요청하였다.²²⁾ 또한 2002년 2월 경제산업성(METI)은 기업들이 내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안전보장무역관리가이드'를 제정하여 기업이 수출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중점사항이나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CP가 갖추어야 할 내용과 수출통제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은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5년 6월에는 수출관리와 관련된 내부자율준수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일반포괄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경제산업성은 CP를 등록한 880개 회사 가운데 830개 회사의 CP를 수리하였다.

2.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사례연구

1) 해외기업의 자율수출체제 구축 사례

(1) 미국의 알코아(Alcoa Inc.)²³⁾

미국의 알코아사는 알루미늄 제품 및 부품뿐만 아니라 상표의 소비재²⁴⁾와 비닐 판자벽(vinyl siding), 잠금장치(fastening systems), 자동차 배전설비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을 출발지 또는 최

준수 심사, 통보된 편지/entity list 심사가 있다.

21) 규제대상이 되어 있던 공작기계가 일본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구소련에 수출되어 구소련의 군사력 강화를 초래했다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22)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미국·일본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사례」, 2005, pp. 18~19 참조.

23)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상세서, 2005, pp. 4~11 참조.

24) Reynolds Wrap, Alcoa wheel, Baco household wrap 등을 말한다.

중 도착지로 하는 물품 등의²⁵⁾ 수출입에 대하여 모든 수출통제 법규를 적용·준수하는 것을 기업의 정책으로 공표하고 이러한 방침은 전 직원들과 자회사 등에 적용하고 있다.

동사의 각 사업단위의 장은 사업장의 수출자율준수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개별 사업장의 위반 행위는 회사 전체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율준수에 관해서는 각 기관과 자율준수 연락관(Compliance Liaison)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기업 자율준수담당관을 비롯, 국제 운송부서(ITD), 법무부서, 세금 담당부서 등이 각 사업단위의 장을 도와 자율준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개발·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사업단위의 장은 자율준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 사업장 내에 해당 사업장의 고객, 공급자, 제품과 원료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입 법규 전반에 정통한 자를 자율준수 연락관으로 임명하며, 이 연락관은 각 조직과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single points of accountability(SPA)”를 임명할 수도 있으며 가능한 수출통제를 위한 고객조사 등의 역할을 이 SPA에게 위임 시킬 수 있다.

물품 및 기술에 대한 규제는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등을 검토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자율준수 연락관을 산업안보국이 개최하는 각종 분류, 허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 제품의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²⁶⁾

한편, 특정 물품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자율준수 연락관이 국제운송부서(ITD)와 협력해서 물품분류를 포함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허가를 받기 전 제품 조합표 등을 이용해서 허가 요건과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무허가 선적 등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율준수담당관은 일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허가 조건이 맞는 지를 확인하고, 허가증의 사본을 수출 운송업자에게 보내는 것을 포함해 허가와 관련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허가 물량, 가격과 유효기간 등을 알린다. 또한, 기술 통제를 위해서, 직원 선발 심사 강화, 영업부서 및 기술부서 직원들의 정보 공개 제한, 미국인 이외의 자가 공장 견학 및 방문 시 자율준수담당관의 검토, 기업 미팅에서 기술 관련 논의 시 법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자 통제를 위해서, 소비자를 비롯하여 운송업자, 중간 판매자 등 모든 거래 참가자에 대해, 견적서 작성 시와 발주 및 선적 직전에 매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단골(regular)” 고객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연 1-2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다. 거래부적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거래부적격자 리스트 상의 업체명과 소재지가 거래 상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자율준수 연락관과 기업 자율준수담당관(Corporate Compliance)에게 연락을 해서 다음 단계의 심의를 진행한다.

25) 물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포함한다.

26) 특히, “분류조합표”를 제작하여 각 사업장이 고유의 수출분류조합표(Export Classification Matrix)를 작성하여 보유토록 하는 한편, 이 표에 각 물품들의 명칭, 설명, 규제품목식별번호(ECCN) 혹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분류, 허가신청 요건과 해당되는 허가예외요건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내에서 수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들과 운송업자에게 발송한다.

최종용도 통제에 있어서는, 자율준수 연락관이 해당 거래가 핵, 미사일 또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최종용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출 담당자는 그 거래를 즉시 중단시키고, 연락관과 기업 자율준수 담당부서(Corporate Compliance Department)에 연락을 해서 거래의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2) 일본의 미쓰이(三井) 社²⁷⁾

미쓰이(三井)물산은 전 세계 20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수출입, 제3국간 무역, 자원개발, 신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최근 기업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해외지사들에게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 역시 해외지사가 자율관리토록 하고 있다.

미쓰이사의 CP는 영업실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각 영업본부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데, 사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안전보장무역관리실이 관련 전문지식 및 데이터를 공급하여 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영업본부장들이 운영 지침으로서 참고 할 수 있는 자체 안전보장무역관리 “Code of Conduct”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동 사는 특성상 타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래선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수출자책임하에 자가 판정을 시행하며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CISTEC, 경제산업성)과 상담하고 있다.

미쓰이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 교섭시 통제 물품 해당여부와 고객, 용도, 출하 경로를 확인하며, 이에 확인된 해당여부와 도착지에 따라 신청서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 작성 시점에서 수출허가 필요여부를 판단하며 상담 및 계약 시점에서 거래교섭 시점과 변경 내용을 재확인하며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괄허가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수출허가를 취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선적 전 물류부서에서 출하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무역관리는 ‘전자 work flow’라 불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두 전산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3) 프랑스의 탈레스(Thales) 社²⁸⁾

방위산업용 물자보안시스템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탈레스(Thales)사는 20년전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여명의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통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동 회사는 수출준수위원회(Thales Export Compliance Committee)를 통하여 그룹전체의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각 수출사업부와 국별 사업부에 수출통제 담당자를 두는 매트릭스 형태의 수출통제

27) 「미국, 일본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사례」, 상계서, pp. 32~34 참조

28) 「수출통제」, 전계서, p. 297 참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수출시 해당계열사에 최종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제표준, 책임 관계, 처벌체계, 모니터링과 감사·교육·훈련 등을 명시한 '내부수출통제지침'을 마련하여 계열사에 전파하고 있다. 특히, 이란 등 민감국가에 대한 수출을 특별 관리하는 한편, 30여개 국가의 해외현지 법인에는 수출통제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또한 동 사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 대한 분석과 개정내용을 보완하고 보잉사와의 수출통제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자체교육기관(Thales University)을 통한 세미나 워크숍은 물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국내기업의 자율준수제도 구축 사례

(1) LG필립스 LCD(LPL)

2005년 국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까지 총 31개 업체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다. 그중 '99년 TFT-LCD²⁹⁾ 제조업체로 Philips와 합작하여 출범한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선두기업인 LG.Philips LCD(이하 LPL)는 2007년 8월 20일에는 LG.Philips LCD(이하 LPL)가 LG 계열사로는 처음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인증을 받았다.

LPL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등에 법제화 된 것으로 보아,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언젠가는 모든 기업체가 도입해야 할 제도로 전략물자관리는 규제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어차피 도입해야 한다면 빨리 도입하여 제도를 사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과 이를 통해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측면도 고려했던 것이다.

LPL 기업의 사내 수출통제 담당조직은 전략물자 관리위원회가 있으며, CEO 직속 물류담당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무는 수출입지원팀, 업무팀에서 10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그 외 영업, 구매, 설계·개발 관련팀 50개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수출입지원팀과 업무팀은 CEO 직속 스텝부서로서, 수출입지원팀은 수출입 통관 등의 물류를 담당하고 업무팀은 업무 홍보와 대정부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업체라는 부분은 향후 영업, 구매 관련 팀에서 바이어를 상대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협상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이하 '앰코코리아')는 미국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Inc.)의 한국지사로 반도체 패키징 전문업체로 2006년 5억불, 2007년 6억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세계의 우수한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제공된 칩을 완제품 IC로 가공 및 TEST 후에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 전문기업으로

29) 노트북이나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통상 LCD라고 불리는 액정 표시장치이다.

아남반도체가 전신이다.

엠코코리아는 자율준수를 철저히 시행하는 기업으로 과거부터 미국 엠코(Amkor)사와 무환수탁가공 수출로 동일고객에게 반복적인 수출로 인하여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혜택과 관련하여 타 기업보다 앞서 CP 지정을 신청하고, 실질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지역의 고객들을 위해 미 상무부의 통제를 받아 직접 관리를 해 왔다.

엠코는 미국 아리조나(Arizona)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제조 전문기업으로 미국, 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에 제조공장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답게 각 해외공장의 물류담당자간에 협력 자율준수체제(Corporate Compliance Program)를 구축하여 각 국가의 제도와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허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전략물자 관리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엠코코리아의 주도하에 미국 엠코 본사 법무팀의 지도를 받아 세계의 전 엠코 공장(Amkor Factory)의 전략물자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사의 수출관리기구로는 전략물자 운영위원장(전무이사) 산하에 4개분과 (고객지원, 인허가, 수출입통관, 교육 및 홍보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의 책임자는 각각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관리자가 전담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통관팀이 있어 입고 및 출하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전략물자관리만을 전담하는 전담자는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에 의해 우선 고객과의 신규거래시 미국본사의 영업부문에서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 파악과 함께 생산물품에 대한 기술명세를 확인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³⁰⁾ 전략물자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세명세(device 등)를 사내 ERP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부로부터 수출허가(포괄)를 받은 다음 해당 물품의 반입-제조-출하-수출신고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각 공급자로부터 기술명세와 함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특히, 엠코 코리아는 각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율준수위원회(Compliance Council)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의 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3.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시사점

외국의 채택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중견 제조업체, 무역업체 이상의 기업에게 CP 도입은 수출 통제를 위해 당면시 되고 있고 통제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한 허가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 연루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의 제도로 중시되고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에는 일반화 되어 있다.

30) 즉,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보(ECCN #, 통제번호)를 받은 후 거래부적격자 목록(denial persons list)에 해당하는 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 목록에 있는 고객과는 거래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자율준수체제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강제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하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통하여 CP를 구축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은 기업 내부의 경쟁력을 위한 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측면이 우선 고려되었던 것이다. 또한 CP제도에 대한 제도도 전략물자 가이드언스를 통하여 기업의 내부 자율준수제도와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내부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은 외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IV.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과제와 경쟁력제고 방안

1.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문제점 및 과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자체 개발한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개발하여 수출한 제품이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이용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차원에서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전략물자 자율관리를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주요국의 경우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2005년 국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1개 업체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의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및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사내 관련부서 및 구성원의 관심 부족이다.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관련부서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대부분 기업내부의 구성원들이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내교육(경영진, 팀장, 관련부서 임직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진의 적극적인 통제시스템 구축의지가 부족하다. 기업의 자율준수 통제시스템 구축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이해와 의지이다.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략물자 관리업무는 국제규범의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기업의 생존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

인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고객 및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회사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사간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특성상 해당 기업간의 정보를 서로 제3자에게 노출하지 말자는 약속을 한 비밀유지 계약(Non Disclosure agreement : NDA)에 의한 표준 NDA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경우 계속 고객을 설득하여 전략물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율준수체제에 따른 경쟁력제고 방안

전략물자의 자율준수가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율준수체제가 구축된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됨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 이미지도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자율준수체제 구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선진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는 내부의 수출관리 수단이며 실제 관리를 하는 것은 기업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다. 기업 구성원들은 CP제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내규정에 입각하여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기업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자율준수 기업으로 인증된다면 향후 영업, 구매 관련 팀에서 바이어를 상대할 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업체라는 부분이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 협상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은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에 자율적인 수출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심사 절차를 마련함은 물론 전 회사 구성원의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이행하는 등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총체적인 전략물자 자율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기업 내부자원 관리를 위한 통제 시스템 구축

기업의 규모와 취급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략물자 관리업무는 국제규범의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기업의 생존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율준수 통제시스템 구축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이해와 적극적인 통제시

시스템 구축의지에 달려있다. 최고 경영진 및 유관팀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하고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시스템에서 각 업무단계별로 통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과 수출활동을 원활히 하고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일본 기업의 경우 모기업과 자금·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해외의 관계회사는 당연히 소재국의 법률적용을 받아 모기업 국가의 법령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략물자 무역관리는 더욱 주권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므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모회사가 바라는 관리를 강제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해외 자회사의 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모기업의 인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중견층과 경영간부의 현지화를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를 통상의 비즈니스 조건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를 통하여 모기업이 바라는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자율준수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준수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컨대 수출입 검사비용 축소, 신용담보 한도 증액, 관세청과 세관의 감사 면제 등 각종 수출입관련 업무 시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준수 업체에 대해서 각종 허가 및 사후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완화하고, 위반 시 제재 경감 내용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종사자들에게 각종 포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혜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차별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자율관리가 가능한 업체는 적극 지원하고, 자율준수체제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업체를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통제는 법과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율적인 통제나 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CP 지정을 받아 자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준수체제 구축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증될 수 있

으므로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CP 기업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율준수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영여건상 전략물자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도이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제 사회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수출 증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하나로 인식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은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체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에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심사 절차를 마련함은 물론 전 회사 구성원의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이행하는 총체적인 전략물자 자율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내부자원 관리를 위한 통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기업의 자율준수 통제시스템 구축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이해와 적극적인 통제시스템 구축의지에 달려있다. 최고 경영진 및 유관팀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하고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시스템에서 각 업무단계별로 통제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모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방안을 해외 자회사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무역관리는 주권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므로, 중견층과 경영간부의 현지화를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를 통상의 비즈니스 조건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를 통하여 모기업이 바라는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율준수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되어야 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준수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와 각종 허가 및 사후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완화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각종 포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혜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준수체제 구축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은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증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CP 기업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율준수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의 포괄적인 수출관리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와 달리 CP제도를 중심으로 기업의 수출관리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은 외국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CP제도를 분석하는 데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많은 사례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CP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현지,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6.
- _____,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안보연구」, 제1권 제2호, 2007.
- 심성근, “전략물자 수출 자율통제 지원방안”, 「나라경제」, 2005.
- 이상진 외1,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국제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수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4호, 2005.
- 이석기 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동향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5.
- 이석기.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산업경제분석」, KIET, 2006.
- 이지석,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분석과 전망”, 「관세학회지」, 제7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6.
- 전봉근,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최승환 외,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국제법무연구」, 제9호, 2004.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국제세미나 발표자료집, 2005.
- _____,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6.
- _____, 「미국·일본 수출자율준수체제와 기업의 사례」, 2005.
- _____, 「일본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모델」, 2005.
- _____,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와 기업의 대응」, 2004.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령, 2007.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통계자료.
- Beck, M.D., R.T. Cupitt, S. Gahlaut, and S.A. Jones (eds.), *To Supply or to Deny: Comparing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s in Five Key Countri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 Gavin Cameron. WMD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The Threat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pring, 2000.
- Hirschhorn, E. L., *The Export Control and Embargo Handbook*, Oceana Publications, Inc.,
- Lan Davis, The Regulation of Arms and Dual-Use Exports(Germany, Sweden and the UK). SIPRI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Michael Beck(2000). Reforming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ummer.
- GAO. Container Security: Expansion of Key Customs Programs will require Greater Attention to Critical Success Factors, July, 2003.